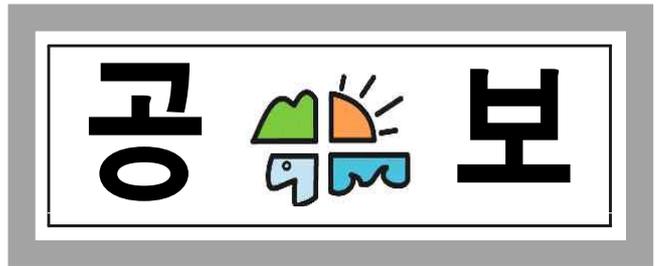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57호 2015년 10월 2일(금)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 속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17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22

공 고

-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교동3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2 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교동3지구 제1종지구단 위 계획구역	속초시 교동 923번지 일원	133,350	증)45.3	133,395.3	1990.8.1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위치	면적(m ²)	결정(변경)사유
변경	①	속초시 교동 923번지 일원	133,395.3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된 공동주택용지 일부 구역내 편입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계	133,350	증)45.3	133,395.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77,515	-	77,430	58.1	
	제2종일반주거지역	12,540	-	12,695	9.4	
	제3종일반주거지역	43,295	증)45.3	43,340.3	32.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속초시 교동 923번지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43,270.3	30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된 공동주택용지 일부 구역내 편입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 조서 : 변경없음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수 (노선)	연장 (m)	면적 (㎡)
합 계	29	3,169	24,624.8	1	23	242.3	3	875	11,018.7	25	2,271	13,363.8
중 로	1	566	8,525.2	-	-	-	1	566	8,525.2	-	-	-
소 로	28	2,603	16,099.6	1	23	242.3	2	309	2,493.5	25	2,271	13,363.8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	15	보조간선도로	566	대로1-1 교동957도	대로1-1 교동957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1	29	10	국지도로	23	대로-1 교동953도	소로3-202 교동953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2	138	8	국지도로	63	중로2-10 교동955도	공공공지 교동955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2	139	8	국지도로	246	중로2-10 교동959도	중로2-10 교동959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02	6	국지도로	415	중로1-1 교동953도	소로3-214 교동954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03	6	국지도로	146	중로1-1 교동953도	소로3-214 교동953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04	6	국지도로	60	소로3-202 교동953도	소로3-203 교동953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05	6	국지도로	35	소로3-213 교동954도	소로3-202 교동954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06	6	국지도로	246	중로2-10 교동958도	중로2-10 교동958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07	6	국지도로	102	중로2-10 교동958도	중로3-208 교동960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08	6	국지도로	252	소로2-139 교동960도	소로2-139 교동960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09	6	국지도로	77	중로2-10 교동956도	소로3-212 교동956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10	6	국지도로	99	중로2-10 교동954도	소로3-274 교동954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11	6	국지도로	89	소로2-138 교동956도	소로3-209 교동956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12	6	국지도로	195	소로2-138 교동955도	소로3-274 교동955도	일반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13	6	국지도로	86	중로2-10 교동954도	소로3-274 교동954도	일반도로		90.8.1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14	6	국지 도로	70	소로3-274 교동954도	중로2-10 교동954도	일반 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15	6	국지 도로	19	소로3-203 교동953도	공공공지 교동953도	일반 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16	6	국지 도로	19	소로3-208 교동960도	공공공지 교동960도	일반 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17	6	국지 도로	19	소로3-208 교동960도	공공공지 교동960도	일반 도로		90.8.14	
기정	소로	3	274	4	국지 도로	199	소로3-212 교동955도	소로3-213 교동955도	일반 도로		90.8.14	
기정	소로	3	보3	4	특수 도로	23	대로1-1 교동960도	소로3-203 교동946도	보행자 전용 도로		90.8.14	
기정	소로	3	보4	4	특수 도로	23	대로1-1 교동960도	소로3-208 교동960도	보행자 전용 도로		90.8.14	
기정	소로	3	보5	3	특수 도로	16	소로3-203 교동948-7도	교동948-7 도	보행자 전용 도로		90.8.14	
기정	소로	3	보6	3	특수 도로	20	소로3-274 교동943-11도	교동943-1 1도	보행자 전용 도로		90.8.14	
기정	소로	3	보7	3	특수 도로	12	소로2-274 교동943-5도	교동943-5 도	보행자 전용 도로		90.8.14	
기정	소로	3	보8	3	특수 도로	22	소로3-210 교동937-10도	소로3-212 교동937-1 0도	보행자 전용 도로		90.8.14	
기정	소로	3	보9	3	특수 도로	15	소로3-214 교동941-2도	교동941-2 도	보행자 전용 도로		90.8.14	
기정	소로	3	보10	3	특수 도로	12	소로3-203 교동948-15도	교동948-1 5도	보행자 전용 도로		90.8.14	

2)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광장	교통광장	교동 산 307번지 일원	4,000	감)45.3	3,954.7	90.8.14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광장	◦ 면적감소: 감)45.3m ² 4,000m ² → 3,954.7m ²	◦ 교동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축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교동3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교동 926-6	1,500.2	-	1,500.2	90.8.14	
기정	④	교동4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교동 944	1,498.6	-	1,498.6	90.8.14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공공공지	교동927-3 일원	2,071.4	-	2,071.4	90.8.14	
기정	③	공공공지	교동 938	702.0	-	702.0	90.8.14	
변경	④	공공공지	교동 940 일원	1,201.6	증)0.3	1,201.9	90.8.14	
기정	⑤	공공공지	교동 951	384.6	-	384.6	90.8.14	
변경	⑥	공공공지	교동 801-8 일원	43	증)2	45	90.8.14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공공공지	◦ 면적정정: 증)0.3m ² 1,201.6m ² → 1,201.9m ²	◦ 오기정정
⑥	공공공지	◦ 면적정정: 증)2m ² 43m ² → 45m ²	◦ 오기정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㉑	유치원	유치원	교동 939	638.9	감)638.9	-	90.8.14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㉑	유치원	유치원 폐지 : 638.9m ²	◦ 당초 개발계획상 유치원 용지에 입지한 어린이집 토지용도를 수용하고자, 유치원 시설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용도계획으로 관리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1	A-1BL	2,214.2	1	교동950	200.6	
			2	교동950-1	229.5	
			3	교동950-2	229.1	
			4	교동950-3	228.8	
			5	교동950-4	197.8	
			6	교동950-5	226.2	
			7	교동950-6	229.3	
			8	교동950-7	229.5	
			9	교동950-8	229.8	
			10	교동950-9	213.6	
2	A-2BL	3,075.3	1	교동948	202.5	
			2	교동948-1	204.2	
			3	교동948-2	237.3	
			4	교동948-3	211.1	
			5	교동948-4	218.1	
			6	교동948-5	238.0	
			7	교동948-6	224.5	
			8	교동948-8	212.6	
			9	교동948-9	217.9	
			10	교동948-10	217.1	
			11	교동948-11	231.9	
			12	교동948-12	269.8	
			13	교동948-13	204.0	
			14	교동948-14	186.3	
3	A-3BL	3,024.1	1	교동949	241.6	
			2	교동949-1	228.7	
			3	교동949-2	228.7	
			4	교동949-3	228.6	
			5	교동949-4	228.6	
			6	교동949-5	228.7	
			7	교동949-6	228.8	
			8	교동949-7	228.6	
			9	교동949-8	228.4	
			10	교동949-9	228.2	
			11	교동949-10	228.4	
			12	교동949-11	247.1	
			13	교동949-12	249.7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4	A-4BL	1,332.5	1	교동947	213.1	
			2	교동947-1	223.6	
			3	교동947-2	221.0	
			4	교동947-3	226.1	
			5	교동947-4	221.6	
			6	교동947-5	227.1	
5	A-5BL	2,187.5	1	교동946	271.9	
			2	교동946-2	265.4	
			3	교동946-3	263.1	
			4	교동946-5	233.2	
			5	교동946-6	228.4	
			6	교동946-7	228.0	
			7	교동946-8	228.3	
			8	교동946-9	228.2	
			9	교동946-10	241.0	
6	A-6BL	372.6	1	교동944-1	186.3	
			2	교동944-2	186.3	
7	A-7BL	3,753.5	1	교동943	221.0	
			2	교동943-1	458.0	
			3	교동943-3	209.2	
			4	교동943-4	267.3	
			5	교동943-6	258.1	
			6	교동943-7	258.0	
			7	교동943-8	228.6	
			8	교동943-9	218.3	
			9	교동943-10	246.4	
			10	교동943-12	204.3	
			11	교동943-13	228.0	
			12	교동943-14	221.5	
			13	교동943-15	246.4	
			14	교동943-16	244.2	
			15	교동943-17	244.2	
8	A-8BL	4,648.4	1	교동937	228.5	
			2	교동937-1	217.4	
			3	교동937-2	435.4	
			4	교동937-3	218.1	
			5	교동937-4	226.0	
			6	교동937-5	225.4	
			7	교동937-6	217.6	
			8	교동937-8,-9	497.4	
			9	교동937-11	229.4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8	A-8BL	4,648.4	10	교동937-12	239.2	
			11	교동937-13	231.1	
			12	교동937-14	253.5	
			13	교동937-15	253.6	
			14	교동937-16	208.9	
			15	교동937-17	212.4	
			16	교동937-18	225.3	
			17	교동937-19	265.0	
			18	교동937-20	264.2	
9	A-9BL	2,615.7	1	교동941	200.5	
			2	교동941-1	229.4	
			3	교동941-3	224.4	
			4	교동941-4	239.1	
			5	교동941-5	212.8	
			6	교동941-6	208.7	
			7	교동941-7	226.4	
			8	교동941-8	231.4	
			9	교동941-9	229.2	
			10	교동941-10	203.3	
			11	교동941-11	202.6	
			12	교동941-12	207.9	
10	A-10BL	2,322.2	1	교동942	234.5	
			3	교동942-2	202.1	
			4	교동942-3	202.2	
			5	교동942-4	202.3	
			6	교동942-5	202.4	
			7	교동942-6	234.8	
			8	교동942-7	234.9	
			9	교동942-8	202.2	
			10	교동942-9	202.4	
			11	교동942-10	202.2	
			12	교동942-11	202.2	
			11	A-11BL	1,569.4	1
2	교동930-1	262.8				
3	교동930-2	253.6				
4	교동930-3	253.6				
5	교동930-4	263.0				
6	교동930-5	266.4				
12	A-12BL	2,800.6	1	교동931	211.0	
			2	교동931-1	195.8	
			3	교동931-2	195.9	
			4	교동931-3,-4	391.2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12	A-12BL	2,800.6	5	교동931-5	195.5	
			6	교동931-6	210.6	
			7	교동931-7	210.8	
			8	교동931-8	195.7	
			9	교동931-9	195.9	
			10	교동931-10,-11	391.6	
			11	교동931-12	195.7	
			12	교동931-13	210.9	
13	A-13BL	4,050.6	1	교동933	197.6	
			2	교동933-1,-2	407.8	
			3	교동933-3,-4	407.8	
			4	교동933-5	407.3	
			5	교동933-6,-7,-12	611.1	
			6	교동933-8	203.7	
			7	교동933-9	197.6	
			8	교동933-10	197.4	
			9	교동933-11	203.8	
			10	교동933-13	203.9	
			11	교동933-15	203.9	
			12	교동933-16	203.7	
			13	교동933-17	203.6	
			14	교동933-18	204.0	
			15	교동933-19	197.4	
14	A-14BL	4,037.2	1	교동934	197.3	
			2	교동934-1	203.5	
			3	교동934-2	204.2	
			4	교동934-3	203.5	
			5	교동934-4	203.4	
			6	교동934-5	203.6	
			7	교동934-6	203.8	
			8	교동934-7	203.6	
			9	교동934-8	203.5	
			10	교동934-9	197.4	
			11	교동934-10,-11	391.4	
			12	교동934-12	203.9	
			13	교동934-13	203.6	
			14	교동934-14	203.7	
			15	교동934-15	203.4	
			16	교동934-16	203.3	
			17	교동934-17	203.5	
			18	교동934-18	203.5	
			19	교동934-19	197.1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15	A-15BL	2,920.6	1	교동935,-13	440.1	
			2	교동935-1	203.8	
			3	교동935-2	203.8	
			4	교동935-3	204.1	
			5	교동935-4	204.1	
			6	교동935-5	204.1	
			7	교동935-6	220.3	
			8	교동935-7	220.3	
			9	교동935-8	204.0	
			10	교동935-9	204.0	
			11	교동935-10	204.1	
			12	교동935-11	203.9	
			13	교동935-12	204.0	
16	A-16BL	2,776.7	1	교동936,-12	413.2	
			2	교동936-1	210.4	
			3	교동936-2	210.3	
			4	교동936-3	222.9	
			5	교동936-4	236.6	
			6	교동936-5	206.9	
			7	교동936-6	196.1	
			8	교동936-7	210.8	
			9	교동936-8	229.2	
			10	교동936-9	214.7	
			11	교동936-10	214.3	
			12	교동936-11	211.3	
17	A-17BL	3,939.2	1	교동925	401.9	
			2	교동925-1	195.2	
			3	교동925-2	195.1	
			4	교동925-3	195.4	
			5	교동925-4	195.2	
			6	교동925-5	195.4	
			7	교동925-6	195.3	
			8	교동925-7	195.6	
			9	교동925-8	195.3	
			10	교동925-9	206.4	
			11	교동925-10	206.2	
			12	교동925-11	195.1	
			13	교동925-12	195.5	
			14	교동925-13	195.1	
			15	교동925-14	195.4	
			16	교동925-15	195.3	
			17	교동925-16	195.2	
			18	교동925-17	195.3	
			19	교동925-18	195.3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18	A-18BL	2,453.5	1	교동926	206.4	
			2	교동926-1	204.2	
			3	교동926-2	204.1	
			4	교동926-3	204.2	
			5	교동926-4	204.1	
			6	교동926-5	204.1	
			7	교동926-7	204.0	
			8	교동926-8	408.2	
			9	교동926-10	203.9	
			10	교동926-11	204.1	
			11	교동926-12	206.2	
19	A-19BL	2,708.3	1	교동928	233.3	
			2	교동928-1	222.2	
			3	교동928-2	222.3	
			4	교동928-3	222.1	
			5	교동928-4,-5	454.7	
			6	교동928-6	232.7	
			7	교동928-7	221.8	
			8	교동928-8	222.1	
			9	교동928-9	222.2	
			10	교동928-10	222.0	
			11	교동928-11	232.9	
20	A-20BL	1,512.0	1	교동929	275.1	
			2	교동929-1,-2	487.8	
			3	교동929-3	244.0	
			4	교동929-4	244.3	
			5	교동929-5	260.8	

■ 공동주택용지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1	B-1BL	12,292.8	1	교동924	12,292.8	
2	B-2BL	28,409.6	2	교동923	28,409.6	

■ 근린생활시설용지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1	C-1BL	1,849.0	1	교동945	314.3	
			2	교동945-2	315.2	
			3	교동945-3	299.6	
			4	교동945-4	309.7	
			5	교동945-5	310.2	
			6	교동945-6	300.0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2	C-2BL	1,815.8	1	교동932	303.9	
			2	교동932-1	294.8	
			3	교동932-2,-4	618.9	
			4	교동932-5	294.6	
			5	교동932-6	303.6	
3	C-3BL	1,812.0	1	교동927	303.2	
			2	교동927-1	293.9	
			3	교동927-2	308.2	
			4	교동927-4	309.5	
			5	교동927-5	293.9	
			6	교동927-6	303.3	

■ 유치원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1	D	638.9	1	교동939	534.4	
			2	교동939-1	104.5	

■ 공공용지

구 분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1	E	234.6	1	교동942-1	234.6	

2)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최대개발규모	적용대상	비 고
A	660m ²	단독주택용지	
C	1,000m ²	근린생활시설용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A	1, 2, 4, 6~10, 12~19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60% 이하.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부는 접한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A	3, 5, 11, 20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60% 이하.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 이하 	
		높 이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부는 접한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 	
건 축 선	-			

■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B	1~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 이하 	
		높 이	-	
		형 태	-	
		배 치	-	
건 축 선	-			

■ 근린생활시설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C	1 ~ 3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부는 접한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 	
건 축 선	-			

■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C	1 ~ 3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 이하 	
		높 이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부는 접한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 	
건 축 선	-			

■ 유치원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D	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시설(30% 미만에 한함) - 학원, 독서실, 아동전용시설, 어린이도서관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형 태	-	
		배 치	-	
건 축 선	-			

■ 공공용지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E	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 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 상인 것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1층부는 접한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
		배 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가급적 일치
		건 축 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비 고
대지의 조경	전구역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2천㎡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 이상	속초시 건축조례 준용

속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속초시 고시 제2015-41호(2015. 9. 15.)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2 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조서: 붙임조서와 같음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도면생략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청호동 433-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청호동 433-3번지 일원	34,926	증)104.2	35,030.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①	속초시 청호동 433-3번지 일원	35,030.2	• 지적 불부합 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계 및 면적 변경

②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4,926	증)104.2	35,030.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4,926	증)104.2	35,030.2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속초시 청호동 433-3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5,030.2	• 지적 불부합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4	742	3,258	1	193	640	2	363	2,104	1	186	514
중로	1	186	514	-	-	-	-	-	-	1	186	514
소로	3	556	2,744	1	193	640	2	363	2,104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2	12~15 (15)	보조간선 도로	1,299 (186)	조양 1423도	청호 793-32도	일반 도로	청호초등학교	74.8.14 (건고 제272호)	-	
기정	소로	1	87	10~12	국지도로	193	조양 1436-1도	조양 1442-22도	일반 도로	-	77.4.19 (강고 제77-72호)	-	
기정	소로	2	94	8~10 (10)	국지도로	671 (184)	조양 1450-2대	청호 433-6대	일반 도로	-	77.4.19 (강고 제77-72호)	-	
기정	소로	2	222	8~12	국지도로	179	청호 433-8대	청호 432-39도	일반 도로	-	77.4.19 (강고 제77-72호)	-	

※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2) 공원시설(변경)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청호동433-3번지 일원	1,500	증)27	1,527	2015.6.12 (속고제2015-25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의 세분	결정내용	결정 사유
①	어린이공원	· 변경 - 면적증가 : 27m ²	· 지적 불부합 조정에 따른 면적 증가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039.2	-	34,926	증)104.2	35,030.2	-
가구 번호와 동일	A1	30,254.2	속초시 청호동 433-3번지 일원	30,181	증)64.2	30,245.2	공동주택용지
	A2	1,527	속초시 청호동 433-2번지 일원	1,500	증)27	1,527	어린이공원
	A3	3,258	속초시 청호동 433-23번지 일원	3,245	증)13	3,258	도로용지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비 고	
-	A1	용도	허용	•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제8호의 부대시설 및 제9호의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 30층 이하		
		배 치	• 아파트는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함 • 아파트를 고층탑상형으로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형 태	• 1개동 정면부 폭을 50m미만 혹은 주동 분절로 계획 • 1~4층의 저층부는 돌 또는 나무재질등을 사용(안정감 유도) • 지붕 및 옥상은 평지붕 형태 가급적 지양, 선형의 변화감이 풍부한 스카이라인 유도 •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권장		
		색 채	• 속초시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 대비가 강한 색채 억제하고 중명도, 중채도의 색으로 자연색과 어울리도록 계획 • 지붕색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brown 계열 • off-white계열 또는 화강석 돌재질 사용 부분적으로 청색톤이 가미된 gray 계열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결정도 참 조			

3.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전면공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 공지	폭원 6m	• 도로변으로부터의 소음 완충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6m의 조경설치	

나. 교통처리계획

▣ 보행 및 차량 진출입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	단지내 보행동선	- 주 보행동선으로부터 보조보행동선 유도
차량동선 및 주차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진출입 불허
	단지내 차량동선 권장	- 단지내 진입도로와 이면도로로 차량 동선 유도

주1) “차량출입불허구간” 이라 함은 대지안으로 차량 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을 말한다.

주2) 주차 출입방향이 표시된 변에서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구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속초시 설악동 산78-1임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2 일

속 초 시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 제한지역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설악2유원지(E·F지구) 제척부지	속초시 설악동 산78-1임 일원	34,280㎡	

○ 제한사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해소 협조요구와 유원지 조성계획상 연계개발 등 집적이익의 이익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을 2015. 6. 19.(속초시 고시 2015-27호)로 유원지에서 제척한바 있으나,

설악2(E, F)유원지 제척지역은 국립공원 해제 후 도시지역 편입 시 주변 개발용도와 국립공원간 완충가능 수행을 위해 보전용도로 전환이 요구되었던 지역으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1km
내외의 집수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적성에 따라 우선 보전대
상지역(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1-5 보전대상지역의 별도 분류)
으로 분류되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
따라서 차후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지정 시까지
국립공원과 주변개발용도간 완충기능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제한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내 불허용도

○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간

나. 관계도면: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건설도시과 033-639-244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및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13조~안 제15조)
- 나.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안 제16조~안 제20조)
- 다.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운영(안 제21~안 제2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여성정책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4826/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전화: 033-639-2441, FAX: 033-639-2739, E-mail: kys675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김영숙(전화번호: 033-639-24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및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 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여성안전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가족지원시설
6. 병원, 보건소, 119 등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 그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 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공동 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속초시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또는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 한다.

1.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④ 서기는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및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를 한다.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 구성) 지역연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실무사례협의회 회원)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여성보호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관련 전문가를 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운영위원이 겸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의 아동·여성보호 업무 담당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안전에 관한 관련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18조(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 구조
2.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19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제20조(연구 및 교육)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아동·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조사와 안전확보방안 연구 지원.
2. 지역연대 구성원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내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내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4장 회의운영

제21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한명인 부시장이 결정한다.

제25조(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6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사례협의회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7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은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